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3-186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 10. 20. (금)
-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